

지식재산권(특허 등) 출원·등록 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안내

1. 지식재산권 (특허 등) 출원·등록 시 성과 소유권 안내

- 한국연구재단(NRF)에서 지원한 국가 R&D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을 출원·등록하는 경우 지식재산권(특허 등)은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한다.

지식재산권 소유 관련 규정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제 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)

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,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,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. 다만,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.

2.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(특허 등)

- 지식재산권 성과(특허 등)를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의 이름으로 출원 및 등록하는 것은 정부 R&D 관련규정 위반 행위이다.

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참여 제한 관련 규정

과학기술기본법 제 11조의2 (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)
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, 단체, 기업, 연구책임자·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(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)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미 출원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.

6.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)

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4의2와 같다.
[별표 4의2]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(제27조제1항 관련)

2. 참여제한 기간

가.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·제3호·제4호·제4호의2·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

5)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	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	2년
--	-----------------	----

지식재산권 소유 관련 규정

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(제 20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)



1) 인정여부(적법성 판단)

정부 R&D 연구성과를 개인명의로 출원 및 등록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및 근거 검토를 통한 적법성 판단



2) 명의 환원

적법성이 불인정된 경우, 연구기관의 이름으로 특허성과 명의 환원



3) 제재 조치
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및 관계자 대상 참여제한 가능